

공 고

● 강릉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-2호
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사용료 미납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사전(청문)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20일

강릉전파관리소장

「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사전(청문)통지 알림」

- 근거 법령: 전파법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제2항 제8호
전파법시행령 제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제4호
- 법령 위반사항: 전파사용료 미납(3회 이상)
- 예정처분: 무선국 허가취소(신고폐지)
- 청문(의견제출) 일시: 2026. 3. 30.(월) 10:00 ~ 14:00
- 청문(의견제출) 장소: 강릉전파관리소 2층 회의실
(강원특별자치도 연곡면 성안길 40-31)
- 공고대상: 5개 시설자 26국

번호	허가번호	호출명칭	국수	시설자명	시설자 주소	예정처분
1	94-2007-41-0000397~398	만호양양101~102	2	(주)만호건설	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54-4,(서문리)	신고폐지
2	94~2006~40~0000474~475	한마음동해240~241호	2	한마음병원	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로 210, (천곡동)	허가취소
3	94-2022-41-0000053~57	바이오춘천500~504호	5	바이오플랜트(주)	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205호 친환경 농업연구센터(효자동)	신고폐지
4	94-2022-41-0000311~312	오로라산전500~501	2	주식회사 오로라산전	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14, 현진빌딩 703호(남양동)	신고폐지
5	94-2018-41-0000302~316	대화용산500~514호	15	(주)대화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97, 우신빌딩 401호	신고폐지

7. 참고사항

- 청문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(청문의 종결)에 따라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, 위임장(대리 참석할 경우)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 청문기일 전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행정처분이 기각됩니다.
- 전화 문의: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☎ 033-660-2973